



출퇴근 교통사고도 통근재해 인정해야 한다.



제일컨설팅 공인노무사 이상국

60년대 이후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정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출퇴근중의 재해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출퇴근중의 재해를 법률적으로 통근재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통근재해를 인정해야 하는 당위성은 근로자들이 업무를 위해 출근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이러한 사고에 직면하고 있다는 데에서 찾는다. 외국에서는 생존권보장이라는 지도이념에 중점을 두어 통근재해의 사고에 대하여 다각적인 구제방법을 마련해 놓고 있다. 예컨대 독일, 미국, 이탈리아, 일본 등의 통근재해가 그 예이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통근재해에 대한 관심이 결여되어 있다. 다만, 1996. 5. 10. 근로복지공단이 개최한 「2천년대를 향한 산재보험발전방안 대 토론회」에서 영세사업장의 산재보험적용에 따른 개정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금융보험법 근로자의 자발적인 가입유도를 위해 출퇴근중의 교통사고도 통근재해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통근재해가 현실적으로 법제화 되어 있지 아니하여 근로자의 보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 출퇴근중의 재해는 통근재해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를 위하여 주거와 근무장소와의 사이를 합리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왕복하는 도중에 발생한 재해”로서 출퇴근중의 재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통근재해는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휘·감독하에 발생한 재해가 아니라는 면에서 업무상의 재해와 구별된다. 그렇다고 하여 출퇴근중의 재해에 대한 피해를 근로자측이 전부 부담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왜냐하면 근로자와 그의 가족은 노무제공을 통한 생계활동에 의하여 생존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비록 거주이전의 자유와 통근수단과 경로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산업사회의 근로자가 매일 일정시간대에 일정한 경로를 따라 통근하는 것은 근로자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불가피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새로운 근무지로 투입하기 위하여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부임중에 일어난 교통사고도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특별9부는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새로운 근무지로 이동하다 당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통근재해에 대한 노동부 예규 제205호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이에 준한 교통수단을 사업주가 이용토록하여 통근도중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으로 인정해왔다. 그러나 1995. 4. 29. 개정에서 시행규칙으로 입법화되면서 “이에 준한 교통수단”이 삭제되어 통근재해의 인정범위가 상당히 축소되어 근로자의 생존권보호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와 같이 사업주의 소유가 아니더라도 오토바이 기름값을 정기적으로 보조하는 경우라든가 근로자의 차량에 대하여 보험료, 유료대를 보조하는 경우에 통근행위중의 교통사고라도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없다. 다만,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으로서 통근버스를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라든가 사업주 특명에 의하여 지휘명령이 인정되는 통근행위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한다. 통근버스를 이용중에 교통수단을 갈아 탄다든가 개인의 사적행위를 위하여 통근경로와 통근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순수한 의미의 통근재해라고 볼 수 없다.

앞으로의 산재보험은 범영역이 미치지 못한 부분을 보다 철저하게 정비하는 쪽으로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통근재해의 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개정이 되어야 함에도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한정하여 법개정이 이루어진 것은 정책과 현실적 연구가 빈약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한다.

